

보도시점 2026. 6. 30.(화) 12:00 (수요일 조간) 배포 2026. 6. 29.(월)

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

-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시 제품의 ‘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’을 연장(3 → 5년)하는 인센티브 적용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·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‘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*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’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화학제품안전법) 제3조제14호)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,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「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서류 및 현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함

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된 ‘화학제품안전법’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제정되었다. 이 고시는 2021년부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*되었던 ‘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’ 제도를 법제화하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기업에 대해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.

*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자발적협약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활동 일환

제정된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‘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’를 표시하여 제품을 제조·수입할 수 있다. 또한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‘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’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(단, 전성분공개와 함께 이행해야 함)받을 수 있게 된다.

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신청방법 및 안내, 그간 선정된 제품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인 초록누리*(ecolife.mcee.go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초록누리 > 자율안전관리 >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>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 소개 및 제품 목록

‘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’을 연장하는 지원책(인센티브)은 그간 전성분 공개와 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안전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경우에 적용(공개 내용에 따라 + 1~1.5년 적용)해왔다.

이번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까지 지원책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이 제품의 위해 우려를 줄이고 안전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“이번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”라며, “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전문용어 설명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	책임자	과 장	허혜인 (044-201-6805)
		담당자	서기관	김용근 (044-201-6829)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	책임자	센터장	방혜원 (02-2284-1860)
		담당자	선임연구원	박찬이 (02-2284-1864)

1. 생활화학제품

- 가정, 사무실,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

2.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

-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·고시*한 생활화학제품

* 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」에 따라 세탁세제, 세정제 등 43개 품목을 지정 관리 중

3.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

-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,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「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서류¹⁾ 및 현장심사²⁾ 기준에 적합한 제품



1) 구성성분의 유해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2) 원료·제품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

※ (참고)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현황 : 세정제 40개, 제거제 7개, 세탁세제 17개, 표백제 8개 등 14개 품목 136개 제품 선정('21~'25)

4. 자발적 협약

-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-시민사회-정부가 함께 2년 주기로 자발적 협약 체결(1~3기)
- 2024년부터는 “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약체”로 상설기구화*

* 총 90개 기관 참여 중(제조·수입·유통사 84개, 시민사회 4개, 정부 2개)

5. 전성분 공개

-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 정보를 초록누리(화학제품안전포털)에 대국민 공개

6.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제도

- 기업이 자율안전관리 제도 각 기준을 충족하여 참여한 경우,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에 참여제도별로 연장기간 추가 적용*

* (근거) 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2,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

< 기업 자율안전관리 제도 개요 >

전성분공개	원료 안전등급 공개 (안전정보 공개)	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
제품 내 함유된 모든 성분*을 공개 * ① 물질명, ② 물질용도 ③ 물질학명/고유번호/화학물질정보  <예시>	전성분공개 물질별 유해성 수준을 등급으로 시각화하여 표기-공개  <예시>	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  <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>

<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적용 기준 >

연장기준 (시행일)	전성분 공개 ('26.5.12~)	전성분 공개+ 원료 안전등급 공개 ('26.5.12~)	전성분 공개+ 화학제품 선정 ('26.7.1~)
연장기간	+1년	+1년 6개월	+2년